

토론회 (이화여대 공동개최)

“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시 유의점”



위원회는 기자와 언론학 전공 학생들에게 최근 빈발하는 언론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언론보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학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재위원 및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인사 50여명과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장재운 부장판사는 제 1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된 사례를 분석하여, 범죄피의자의 신원공개라든가, 사생활 및 초상 공개와 관련한 다양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유형별로 소개했다. 이어진 제 2주제 발표에서는 김충일 중재위원(前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이 오랜 기자생활 경험을 토대로 후배 기자들이 범하기 쉬운 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일 시** 2011년 11월 30일(수) 14:00 ~ 17:0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발 제 자 장재운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충일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
사 회 자 박성희 (중재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편집자 주 - 주제논문 중 언론조정중재사례와 유형별 유의점만을 발췌하여 요약해 수록하였습니다.
발표문 전문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각종자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보 쟁의 현황 및 보도시 유의점

1. 피해자의 동의여부 및 범위가 쟁점인 사례

가. 미담기사여부 불명, 동의 없는 성명과 초상의 공개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 (2011서울중재95, 조정신청 사건에서 전환됨)

1) 사건의 개요

2011. 2. 경 피신청인 발행의 ○○신문은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방송통신대 졸업한 000씨”라는 제하에 신청인이 방송통신대를 15년에 걸쳐 30학기 만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실을 소개함. 그 기사에는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방송통신대를 다닌 것이며, 신청인의 원래 전공은 성악이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 사실,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열정에 재수강을 거듭하느라 등록학기가 30학기에 이른 것으로 기재됨. 기사 우측상단에 학사모를 쓴 신청인 및 2명의 다른 졸업생 사진을 신고 사진 아래쪽에 신청인의 성명 및 사진속의 위치를 표시함.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 성명, 나이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기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독자적 판단으로 이 기사가 신청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미담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게재한 것으로, 미혼인 신청인은 자신의 나이 등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프라이머시에 관한 사항이 알려짐으로써 보도를 접한 친척, 친구들과의 말싸움, 의욕상실, 대인기피

및 이로 인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역경을 딛고 졸업장을 받은 신청인의 사연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실은 점은 인정하지만, 인터뷰를 마친 뒤 신청인이 ‘나이와 사진은 빼 달라’고 이야기 하자 취재기자는 ‘나이는 뺄 수 있는데 인물 면에 게재되는 기사라 사진은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으나 신청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사진 게재에 대한 동의로 판단했다고 주장. 신청인의 기사 삭제요구 후 즉시 신문사 홈페이지 및 주요포털에 연쇄해 해당기사 삭제하고, 사회부 데스크를 통해 신청인에게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일정액의 손해배상 용의가 있다고 답변.

2) 대상 보도¹⁾

〈2011. 2. 0. 피신청인 발행의 ○○신문 기사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방송통신대 졸업한 000씨” 라는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백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중재합의 후 다음과 같이 중재판정

1.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0일까지 1,7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대상보도 등을 인용함에 있어 당사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기사에 실명 등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고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 또는 다른 부호로 표시한다. 이하 같음.

2. 이유

가.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 2011. 2. 0.자 00면 「15년 만에 쓴 학사 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피신청인에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보도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2011. 7.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881)을 하였다가, 2011. 8.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나. 판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기사는 신청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

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 및 나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나이·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1,700,000원으로 한다.

다. 결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보도시 유의점

미답성 기사를 취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신원의 노출을 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상 보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함이 바람직함

나. 동의 범위를 초과한 보도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1031)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저녁 9시 ○○데스크는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라는 취지로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소개함. 피신청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개를 받아 신청인을 인터뷰대상자로 선정한 뒤 인터뷰하게 됨.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하는 모습, 얼굴, 성명, 나이, 직업 등 신청인의 신원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신청인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사실,

아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다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은 사실, 그것은 리빙빙 대출로서 이자가 연 21%나 된다는 내용이 자막표시와 함께 기자의 내레이션으로 소개됨.

신청인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정책을 알리는 취지에서 자산관리공사 측의 인터뷰 제의에 동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촬영을 용인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위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신청인의 인터뷰 전제조건을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인터뷰 당시 신청인이 자신의 신원공개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자 이를 신원공개에 대한 동의로 보아 위와 같이 보도하였다고 주장.

2) 대상 보도

〈2011. 8. 0. 저녁 9시 ○○데스크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천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1백만원)

5) 보도시 유의점

취재 상대방을 소개한 자료부터 취재승낙의 뜻만 전해 들었을 뿐, 신원의 노출과 관련한 동의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재상대방이 인터뷰에 응하고 자신과 관련한 촬영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곧바로 신원노출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임의로 해석하여 취재상대방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여서는 곤란함

다. 미담성 기사이지만 신원노출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2010서울조정916)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일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지난 2007년 할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소년 이 부모 없이도 남한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위 소년이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인 신청인의 손자라고 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전협의 없이 기자가 학교로 찾아가 손자를 취재하고 사진을 찍은 후 집으로 찾아가 신청인에게도 사진을 찍자고 하였고, 신청인은 사진, 이름 등 어떤 것도 실을 수 없다고 하자 기자는 손자에 대해서만 쓰겠다고 하였으나, 보도에서 신청인과 손자의 실명을 비롯, 손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이름 및 학년 등과 함께 신청인 가족이 북한에서 겪었던 과거사 등을 상세히 다루므로써 신청인의 신원이 북한 당국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두고 온 신청인의 남은 가족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고 주장. 피신청인은 북측에 신청인의 가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사실에 기초한 미담성 기사라고 답변.

2) 대상 보도

〈2010. 5. 0. 자 ○○일보 A13면 『탈북소년 ○○이 “올해는 외롭지 않아요”』 제하의 기사〉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억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5,000,000원).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5) 보도시 유의점

취재 상대방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그러한 우려를 표명한 경우에는 미답성 기사라 하더라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함이 바람직함

5) 보도시 유의점

A씨와 관련하여 볼 때 비록 수사기관에 고소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적인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함. 직접 취재한 ○씨에 대하여도 그가 인터뷰에 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A씨를 고소한 내용을 이 사건 보도와 같이 세세하게 표현하는 형태의 보도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

라. 연애문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하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657)

1) 사건의 개요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이 전 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지극히 사적인 사항들이 기사내용에 포함됨. 신청인은 기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보도되는 것에 동의한 바는 없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성) 및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되었음은 물론 과장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배신녀로 묘사되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2) 대상 보도

〈2011. 5. 0. ○○뉴스「연인에서 앙숙으로 ... “졌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백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1백만원)

2.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

가. ‘길거리스케치’ 보도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 (2010서울조정1532)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주)○○○투데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된 날 아침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재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도 없고, 위 사진기사로 직장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인정.

2) 대상 보도

〈2010. 11. 0. ○○○투데이 8면『춥다 추위』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천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5십만원 및 유감표명)

5) 보도시 유의점

사진에 찍힌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일 경우, 기사 내용에 따라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연후 보도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함

나. 잠입취재시 몰카로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사례

(2010서울조정1410)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은 조정대상 보도에서 베트남에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마취 상태의 곰으로부터 채취한, 안전이 의심스러운 쓸개즙을 구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유리컵 속에 든 쓸개즙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냄.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곰 농장 방문은 여행 패키지 상품의 일정에 따른 것으로 자신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발 프로그램에 자신의 초상이 아무런 승낙도 없이 공표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2) 대상 보도

〈2010. 9. 0. ○○○TV 「○○○고발」 ‘충격보고! 초저가 해외여행의 실체’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천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1백만원 및 유감표명)

다. 포털 검색을 통해 발견한 미용실 홍보용 공개 사진을 뉴스에 사용한 사례

(2011서울조정658·659 정정 및 손해청구)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은 2011년 5월 0일 ○○○ 아침뉴스타임 내 ‘살림충전’ 코너에서 알뜰 웨딩을 주제로 조정대상 보도를 방송하면서 결혼 준비에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헤어메이크업’ 이미지가 필요하자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 이미지(웨딩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이미지)를 찾았고, 그 출처를 확인해보니 미용업체 소속 헤어디자이너의 블로그에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사진으로 해당 미용업체 홍보 차원에서 공개한 이미지로 판단하고 신청인의 이미지를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사용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웨딩업체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했지만,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해당 보도로 인해 자신이 저가의 결혼식을 올린 것처럼 주변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의 주된 취지는 고비용 결혼식이 팽배한 요즘, 20만 원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도 실속 있고 질 좋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였음을 주장.

2) 대상 보도

〈2011. 5. 0. ○○○TV 「○○뉴스타임」 ‘알뜰결혼 대작전’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백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3백만원).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5) 보도시 유의점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공개된 사진 등이라 할지라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격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사용승낙을 얻거나 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용함이 바람직함

3. 사실보도지만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0전북조정27)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주)○○뉴스는 조정대상기사에서 강간치상혐의로 만기출소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강간해 긴급체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동생과 피해자인 누나의 성과 나이, 이들이 거주하는 동 이름 등을 적시함. 이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신청인 측은 경찰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라고 답변.

2) 대상 보도

〈2010. 8. 0.자 ○○뉴스『강간치상혐의 만기출소 50대, 친누나 강간 -○○경찰, 강간치상혐의로 또 긴급체포』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백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5십만원 및 유감표명)

5) 보도시 유의점

피신청인이 비록 경찰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다고 하나, 동생이 교도소에 갔다 오고, 50대의 나이에 누나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점과 거주지 동명, 그다지 흔하지 않은 한 피해자의 성씨가 기재됨으로써 지역규모에 비추어 볼 때 지인들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보도됨. 범죄사실의 보도가 갖는 공익적 측면에 비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심각한 사안이 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됨으로써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중대함에 유의

4. 포털에 대해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0서울조정1421)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 ○○○은(주)○○○미디어로부터 조정대상 기사를 전송받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게시함. 신청인은 위 사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추위로 잔뜩 움츠린 채 걷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기사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즉시 해당 기사를 전송한(주)○○○미디어와 이를 전송받아 게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신청인과 기사를 전송한(주)○○○미디어 측으로부터 사진의 삭제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함. 그러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서는 요청일로부터 만 하루가 경과되도록 해당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고, 신청인에 대한 조롱성 댓글이 여러 개 게재됨. 이에 신청인은 기사를 작성·전송한(주)○○○미디어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은 계약에 의해(주)○○○미디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게재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일체의 수정, 삭제

가 불가능하다고 항변.

2) 대상 보도

〈포털사이트 ‘○○○’가 매개한 2010. 10. 0. ○○
○경제의 『“더 빨리, 더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
의 기질을 바꾼다?』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백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50,000원).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5) 보도시 유의점

포털사의 경우 원 기사공급처와의 계약상 송출기사
를 그대로 실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
로 기사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
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5. 방송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과 함께 확인되 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문제된 사례 (2011서울조정1047)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은 모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남녀 단체 미
팅 TV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 신청인에 대한 확인
되지 않은 논란을 ‘불륜녀’란 표현과 함께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방송 출연 장면을 담은 사진까
지 공개함. 그러나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의 방송 출
연 이후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루머일 뿐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내용임. 신청인은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루머를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며, 신청인은 이미 전국적인 방송에 출연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2) 대상 보도

〈2011. 9. 0. ○○데오 「짜 여자 ○호, 천사표? 신혼
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 무엇?」- ‘짜 천사표 여
자 ○호 결국 불륜녀로 확인... 충격적인 진실’ 제하〉

3)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천만원

4) 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2백만원)

5) 보도시 유의점

기사가 공익과는 무관한 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
라 사생활, 초상권을 침해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은 게시판에 특정 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상
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변명하나 특정 글을 인용
전달하는 경우에도 그 기사가 전체로 보아 그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
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제2주제논문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시 유의점

1. 정정보도청구 사례

가. 정황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사례

1) 사건 개요

대학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A주간신문은 지난 2011년 2월 「S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로, 「S대학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K교수를 기소유에 처분이 나기 전날 이미 학과장으로 임명했는데, K교수는 보직을 받은 후 총장에게 「자신을 고발한 교수 4명과 함께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냈고, 이를 학교 측에서 수용해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을 폐쇄했다. 한편 동료교수 4명이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대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S대학교는 “①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이 폐쇄된 것은 K교수가 보직에 임명되기 이전이므로, K교수가 보직을 맡은 후 연구실이 폐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② K교수는 기소유에 처분이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S대학교가 K교수의 ‘기소유에’ 사실을 안 직후 학과장에 임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③ K교수가 제출한 탄원서의 주 내용은 ‘동료교수 4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공포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배려를 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법원은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만 S대학교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간접강제를 통해 이 부분만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2011서울조정330·331).

2)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 참석한 A주간신문은 “S대학교에 K교수와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나, S대학교가 끝내 이에 응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변 정황 및 인물들에 대한 취재만 할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해 기사화한 것이다. 하지만 K교수 관련 문

제로 신청인 S대학교 내부에 상당한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에 대한 정황을 보도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K교수가 기소유에 처분이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K교수 보직 임명 전에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 폐쇄에 대한 메일을 이미 발송했던 사실 등 신청인 S대학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및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정황을 기초로 4인의 교수의 말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으로 판단, 또 설령 전체적인 맥락이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 신청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정보도 할 것을 권유했다.

나. 기본적인 취재가 부실한 사례

1) 사건 개요

A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0년 10월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 개 단체 뭉쳤다』 제하의 기사에서 “H단체는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친북단체로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H단체는 “청소년의 복지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친북단체와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408·1409).

2)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A인터넷 신문이 H단체나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H단체를 친북단체로 단정해 보도한 것임이 확인됐다. A인터넷 신문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조정에 합의했다.

다. 사회적 파급성 높은 사안에 대한 집착과 선입견이 개입된 사례

1) 사건 개요

소비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신문 A사는 “B사가 생산, 판매하는 음료 C에서 머리카락과 눈썹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제보자 D씨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B사의 실명 및 음료 제품명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제품 제조 공정 과정에서 절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며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섬유조직의 일종으로 보이며,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A사에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A사는 ‘논란 확산을 경계하며 압박성 발언과 경고를 했다고 기사를 작성, 보도’ 했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583).

2) 심리 내용

중재부가 해당 제품을 조사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해당기관에서는 “문제의 이물질이 제조 공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회신이었다. 이를 근거로 중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제보자의 말만 듣고 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B사의 제품에서 나온 것이 머리카락과 눈썹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A사에 정정보도로 합의할 것을 권고, 정정보도 및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반론보도청구 사례

가. 과도한 공격적 비판기사로 인한 청구 사례

1) 사건 개요

A주간지는 2011년 3월 『황금알 거위 B사의 배 누가 가르냐』 제하로,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B사가 내분에 휩싸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A주간지는 “B사의 양대 주주 중 하나였던 C사가 주주배당을 크게 높이고, 기술사용료를 대폭 증액해 요구하는 등 B사의 이익 빼가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C사는 이미 사장으로 내정됐던 인사를 내치고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D씨를 사장으로 앉히는 ‘궁정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B사의 임원 상당수가 그만두는 결과가 초래됐다. 사장으로 선임된 D씨는 B사의 핵심경영자치였던 ‘인간존중경영’, ‘사회공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내부에서 ‘변절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한편, C사는 B사의 전임 사장 E씨가 나간 후, B사의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B사는 “B사의 양대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에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법적인 것이며, 기술사용료 인상 역시 양 주주사와 B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므로 ‘이익 빼가기’가 아니다. 또한 D사장은 양 주주사의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선임되었으므로 ‘궁정쿠데타’가 아니며, 취임 시 약속한 ‘사원존중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으므로 ‘변절자’라는 표현은 지나치고 사실도 아니다. 또한 B사의 경영권은 B사에 있으므로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C사에 경영권을 빼앗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2011서울조정226).

2)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B사는 “B사의 양대 주주인 C사와 F사 간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A주간지는 일방 당사자인 F사의 의견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 보도해 오히려 F사의 홍보수단으로 전략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주간지는 “B사 비서실

과 홍보팀을 통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B사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반론 의사나 의견 개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이다. 또한 기사에 기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F사 및 B사에서 오래 근무한 전·현직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의견이라 판단했다”라고 반박했다.

중재부는 사실에 대한 언론사의 해석에 과도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너무 엄격히 제한하면 언론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숫자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할 것을, 그 외 사안의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사의 반론을 충분히 실어주는 반론보도로 할 것을 양 측에 권고했다. 양측은 중재부의 권고를 수용해 정정 및 반론보도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보도자체의 맥락이 틀려서가 아니라, 기자가 다소 정의감이 지나친 나머지 과도하게 양측을 선과 악으로 구분짓고, 기자가 한쪽편에 서서 신청인측을 자극적인 어휘를 빈도 높게 사용하여 매도함으로써 빚어진 갈등이었다.

나.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운 사건

1) 사건 개요

중앙일간지 A신문은 지난 2010년 7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로, “국회의원 B씨가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B씨는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C대 토론팀에게 ‘심사위원들은 실력도 중시하지만 이미지도 본다. 그런데 상대했던 D대 팀 학생들이 평범한 이미지인 것에 비해 C대 팀은 너무나 잘생겨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고 위

로하는 취지였을 뿐, 외모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아나운서와 기자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기자가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으므로 기자가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이 여학생만 쳐다봤다는 부분은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여학생이 1년 4개월 전에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던 여학생임을 알게 되어 그 당시 대통령이 어린 학생들이 참석할 것을 기특하게 여겨 학교와 전공을 묻기까지 했다’는 취지였지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2010서울조정1133·1134).

2)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 참석한 B씨는 “기자가 당시 매우 시끄러운 음식점에서 있었던 대화를 멀리 떨어져 있던 학생에게서 전해 듣고 취재하여 과장, 왜곡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복수의 학생에게 확인해 취재를 마쳤고, 이후 학생들이 B씨가 기사내용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으므로 사실보도이며, 이미 이 건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B씨의 주장 중 A신문이 보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으로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 A신문에 반론보도 게재를 권유했다. 양측은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반론보도로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무리하게 보도 방향에 맞추려 반론권 무시하다 뒤늦게 반론권 허용한 사례

1) 사건 개요

A방송은 지난 2010년 5월 한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의 무게-학자와 논문』 제하로 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이중계재 의혹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대학교수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논문 이중계재 의혹에 대해 취재, 교수출신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인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A방송은 “(전략) 확인결과, 이중계재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6명이었다. 의원들의 해명도 공직자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내레이션에 이어 “저 같은 사람이 쓰면 막 여기자기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논문, 발표했던 논문도 ‘발표된 것 잘 봤습니다’, ‘그것 좀 신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쪽에 실으면서 ‘니 논문에 그것을 안 썼느냐?’ 고 원 저자에게 얘기하면 원 저자는 참 답답한 거죠”라는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A방송이 문제삼은 논문은, 내가 저술한 책이 C학회가 선정하는 ‘○○언론법상’의 2003년도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2회 ○○언론법상 수상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수상기념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 후 이 논문을 보완, 정리해 교내 학회지에 실었는데, C학회에서 ‘수상자의 기념논문이었던 학술세미나 발표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고 싶다’고 요청한 후 그대로 게재한 것뿐이다. 즉, 이 논문은 내가 자진해서 이중 투고해 발생한 이중계재가 아니라, 시상자였던 C학회가 수상자인 나의 수상기념 논문을 학술세미나 기록용으로 학회지에 게재한 것이다. 학회에서는 수상작이나 초빙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것을 이중계재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게재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집’ 등에서도 이중계재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정을 충분히 취재자에게 설명했음에도, 일반 시청자들이 윤리적·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인 뻔한 ‘이중논문 게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나를 악의적인 이중계재를 한 다른 인사들과 동일

하게 취급되도록 보도했다. 또한 인터뷰 역시 이 논문이 두 곳에 실리게 된 경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빼놓고, 발언의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 보도해 공직자로서의 명예에 상당히 큰 손상을 입혔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2010서울조정915).

2)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A방송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논문 이중계재 및 연구비 이중 수령의 연구부정행위를 파헤치고자, 교수출신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논문 실태를 점검하고 이중계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취재의도를 밝혔다. 이어 A방송은 “신청인은 C학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므로 이중계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중계재 여부를 가릴 때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 또한 특집 또는 선집일 경우에는 이중계재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논문이 실린 책자에는 특집이나 선집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신청인은 논문이 게재된 C학회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청인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보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외형적, 결과적으로 보면 이중계재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해당 보도는 이중계재인지 여부만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중계재를 없애자는 취지로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보도로 판단되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고 신청인 B씨는 논문의 이중계재로 연구수당이나 승진 등에 있어 특별한 이익을 얻었거나 추구한 것이 없으므로 반론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양측은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반론보도로 합의하였다.

3. 무모하고 무감각한 편집으로 인한 피해사례

가. 무감각한 편집사례

1) 사건 개요

A협회 신문은 지난 2011년 3월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제하로 “유사경유를 판매한 판매자와 이를 구입해 사용했던 버스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기사와 함께, G고속관광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인 G고속관광은 이 보도로 인해 거래처나 고객사, 심지어는 차고지 관할 공무원들까지 신청인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고, 신청인에게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011서울조정343·344).

2)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 출석한 피신청인은 신속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유사석유 사용 적발 기사를 작성한 후 이에 부합하는 자료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G고속관광 소속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발견해 이를 별 생각 없이 기사에 게재했다고 보도 경위를 밝혔다. 피신청인은 즉각 G고속관광에 유감을 표명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 1면에 각 정정보도를 내보내는 한편, 150만 원의 손해배상에도 합의했다.

나. 무모한 편집사례

1) 사건 개요

인터넷 신문 A사는 지난 2010년 1월, 『시민채널 〇〇〇, 공산주의 선전방송인가』제하로 “시민채널 〇〇〇이 제작하는 모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만든 내용을 심의 없이 내보냈다가 일부 문제가 지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지원금 중단 조치를 받았고, 결국 해당 프로그램이 중영됐다. 또한 참여정

부 5년 동안 총 15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방송내용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시민채널 〇〇〇은 “보도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내부의 자체 운영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방송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중단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중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여정부 기간 동안 150억 원이 아닌 83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했고,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편성원칙으로 하는 시청자 참여 방송이므로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60).

2) 심리 내용

조정심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터넷 신문 A사는 신청인 〇〇〇에 보도내용과 관련해 직접 취재를 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한 간접 취재를 한 바 없고, 모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받아 이를 여과 없이 재작성해 보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시민채널 〇〇〇의 반론이나 주장은 전혀 게재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만을 기사화한 것이다. 양측은 중재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일방적 제보에 의존한 보도한 사례

1) 사건 개요

재건축 관련 뉴스를 전하는 A신문은 “B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임원이 C공기업을 정비업체로 선정하는 가계약을 맺은 후, 본 계약 체결 전에 C공기업 책임자와 일본 관광을 다녀왔고, 그 후 가계약에서 제시된 금액대로 본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이었던 신청인 D와 E는 “C공

기업과의 계약을 이용해 일본에 관광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일본에서 있었던 재개발 관련 세미나 때문에 일본에 다녀온 것이다”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338).

2) 심리 내용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일본에서의 세미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A신문은 B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였던 F씨와 G씨의 제보에만 의존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신청인들에게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 양측은 정정보도로 합의하였다.

4. 보도 시유의점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 시 유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 언론들이 경쟁하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보나 풍문에만 의지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 등은 뉴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 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뉴스로 생산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정정하는 태도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 일방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국민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방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의 여러 입장을 균형 있게 취재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편집 시 인격권과 관련해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 지에 대해 보다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데스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시간에 쫓기어 급하게 뉴스를 생산하거나 아무래도 데스크보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인격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스크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이 인격권 침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일방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례에서 나왔듯이 최근 영상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조정·중재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제도도 일단 발생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람들에게 일단 부정적인 내용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미지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손해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론 개인이나 기업 등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은 기사작성 시 개인이나 기업 등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했다

면 언론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용만족도조사(2011)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언론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후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있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보도와 인격권' 관련 교육을 받은 언론인들은 교육내용이 취재 및 편집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언론인들이 언론보도와 인격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게 될수록 기사 작성 시 인격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자들이 언론보도와 인격권과 관련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에 관한 것이면 무조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 대형마트 음식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면 대형마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를 알리는 것이 식품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해당업체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과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다. 두 번째, 스케치 사진을 찍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찍히기도 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10명이 찍혔다면 모든 사람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얻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자신의 따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제보하며 따님의 사진을 건네주었다. 이를 그대로 기사에 실어도 되는 건지, 사자(死者)의 초상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궁금하다.

토론 내용

I. 제1주제 토론내용

박성희(사회자)

지금부터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민호(파이낸셜뉴스 기자)

3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 번째, 보도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

장재윤(제1발제자)

첫 번째 질문은 발제문 중 I.의 마.항에 있는 판단의 준거에 해당된다. 이것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침해가 있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관찮은 경우도 있다. 또한, 면책되는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보다 우월하지 못해서 침해가 귀착되는 경우도 있고 반면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고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판단의 준거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신장과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비교해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건마다 다르고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판결을 하게 된다. 그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다. 예로 제시한 대형마트의 경우 대장균, 위험한 음식 등이 판매되는 것은 비

교적 명확하게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 경우에는 보도내용의 사실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므로 일단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다. 보도대상자의 권리 침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를 경찰자료만 보고 했느냐 혹은 제보자의 말만 듣고 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소된 내용이 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찰자료만 보고 보도한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인 초상권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다 동의를 구해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 내용이 누가 봐도 별 문제가 없고 인격권 침해 소지가 없어 보이거나 혹은 신원이 노출되더라도 그 사람이 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이는 현직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며 만약 100명이 지나가면 어떻게 100명의 동의를 다 얻느냐 혹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나 보도대상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거나 자신이 보도에 이용되는 것이 싫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하다. 끝으로 사자(死者)의 초상과 명예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것은 유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박성희(사회자)

발제문의 사례를 보면 합의가 되거나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 참석자들께서 당사자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최선열(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사례들을 보면, 거의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에서 10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사례 중 2010전북조

정27의 사건은 신청인이 50대 여성으로 해당 보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금액이 너무 적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청구액 자체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종량(부위원장)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신청인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보도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결국 기사화되었다. 기자는 경찰 측의 자료를 받아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중재부에서 경찰 측에 사실 조회한 결과, 경찰에서는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본 사안에 대해 중재부는 적정한 배상액을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 결과적으로 50만원으로 합의되었는데 신청인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신청한 것이지 금액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사에서 크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날 지역 언론사의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그 책임을 기자에게 돌리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그동안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곳에 계신 언론학 전공 교수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최선열(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미국 맥도널드에서 한 할머니가 손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고 소송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맥도널드라는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사회적 약자인 할머니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분쟁에 있어서도 맥도널드 사례 처

럼 상징적인 의미를 이끌어 내야 한다.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의식을 높여야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의선(중재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언론중재법 22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중재부의 사례에서 신청인은 법률을 잘 몰랐던 평장히 소박하고 착하신 분으로 보여 진다. 비록 신청인은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본다. 손해배상액수의 상향과 더불어 비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이 아쉽다.

장재윤(제1발제자)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 언론사들은 손해배상액이 많다고 생각해 조정에 잘 응하려 하지 않는다. 언론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신청인이 많다. 이런 경우 금액을 좀 낮춰서 합의점을 찾다 보니 배상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임병렬(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의 성격을 감안하자면, 손해배상의 인용금액이 재판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언론사와 신청인을 굳이 비교하자면, 아직까지 더 강한 힘을 가진 언론사는 금전적인 배상에 관하여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 액수를 정

하는데 언론사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중재부에서는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석자들께서도 위원회를 통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과 달리 인지가 불치 않으므로 신청인의 최초 청구액수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이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정효진(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당사자가 인터뷰 등에 응했지만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도가 되어선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건호(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도할 경우, 피해자는 그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몰래 카메라나 녹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익에 합당한지 등을 하나의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다.

유의선(중재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보다 조정의 역할을 주로 하는데, 조정은 양측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데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 신청인의 경우 조정에 대해 무지하거나 지나치게 순박해 작은 금액에 합의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는 사회정의 구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론사는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구 금액을 최대한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나가는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본다.

장현정(언론홍보영상학부 대학원 과정)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하여 세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 첫째, 중재위원들은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되며 독립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언론사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에 힘을 써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성숙되고 있다는 내용을 논문을 통해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언론사 내부에 자체적인 규제부서를 두는 것이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다.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재정적인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셋째,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제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행하고 있는 홍보활동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김충일(제2발제자)

청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익과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청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가 주가 될 텐데, 현재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금액은 법원에 비해 아주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굳이 위원회에 청탁할 일은 없다고 본다. 또한 중재부는 저명한 법률가, 교수, 언론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이므로 특정 중재위원에 대한 청탁이나 부탁이 통할 리가 없다.

장재윤(제1발제자)

덧붙이자면, 언론중재법에 중재위원들의 직무상

결격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중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그 자격에 대해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고 중재부의 구성 역시 법관과 법률가가 반드시 포함되며 제척사유라고 하여 재판에서 법관에게 요구하는 사항들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들이 중재위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친족관계 등 심리가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중재위원의 엄정함은 법률과 규정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위원 스스로가 이에 부합하여 심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광건(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언론사 내에 자체적인 규제제도와 기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법률에 따라 규모가 큰 언론사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언론사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사무처에 상담팀과 교육팀을 두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언론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기업,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도시 유의점,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기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및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제도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언론의 자유가 잘못된 보도를 확산시키는 자유는 아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올바른 기사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인격권을 보

호해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넓히기 위해 홍보의 중요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정책 변화에 따라 위원회 광고예산이 미비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는 과거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각종 행사를 통해 위원회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 위원회 전문가 상담코너를 마련해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직접 답변을 해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언론과 사람’이라는 위원회 소식지를 매월 1만부 가량 발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와 서울과 경기지역의 국민은행 지점, 그 밖에 각종 공공기관 및 언론사,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배포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홍보하고 있다.

엄민호(파이낸셜뉴스 기자)

인터뷰나 취재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우호적인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다.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에 있어 취재시에는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기사가 나간 이후,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제2발제자이신 김충일 위원님께서는 언론사에 30년간 재직하신 선배님으로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취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는 것을 피해가면서 공익적인 기사를 쓰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또한,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언론사가 숨기듯 내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보도 분량 등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충일(제2발제자)

첫 번째 질문은 매우 어렵다. 기자는 마감 시한에 쫓기다 보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반론보도 등이 너무 작은 크기로 게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신청인들이 상당하다. 비록 법률에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방법, 크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적인 방향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언론사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옥(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장)

조정的基本적인 대원칙은 조정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소송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심리참석자 모두 말하기가 꺼려질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조정법에서는 조정과정에서 나온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과정에서 나는 내용들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한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조정법에는 조정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언론중재법에는 민사조정법 상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사조정법상의 규정이 위원회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만약, 언론조정중재 과정에서 나온 정보나 발언 등이 나중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해석이 된다. 그래야만 조정의 기밀이 유지되어서 허심탄회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 위원회는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이다. 관련 규정도

만들었으며 심리실 입구에 중재부장의 허가 없이 조정 과정의 내용을 녹화, 녹취하는 것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여 고지하고 있다.

최다영(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대학원 석사과정)

정정이나 반론과 같은 보도청구에 관련된 사례 중에는 사실확인이 불충분하여 조정신청을 받게 된 기사들이 많다. 기본적인 취재가 불성실한 기사에 관해서는 조정중재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취재 대상이 학교나 대기업과 같은 공적 조직이며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거라 생각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황을 통해 보도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사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심리과정에서 기자가 사실을 성실하게 취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이 자신의 입장이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장재윤(제1발제자)

반론이나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해당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말씀하신 경우는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제하신 부분처럼 기자가 취재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새삼스럽게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정정이나 반론

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박성희(사회자)

예정된 토론시간을 넘길 정도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끝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의 총평을 부탁드린다.

Ⅲ. 위원장 총평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님과 학생들, 사무처 임직원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말씀들은 앞으로 중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한다. 먼저, 청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어떤 청탁도 없었다. 이는 중재위원들의 명망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인식이 사회전반에 이미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권한이 있어 어느 일방의 고집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중재부가 적당한 선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해주는 일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200만원 청구했는데 중재부 판단으로는 500만원 이상, 나아가 1000만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청취지는 법정에서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 신청인이 조정중재과정에서 원한다면 신청취지를 높은 다음, 중재위원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년 전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손해배상 사건이 많지 않았고 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해주는 손해배상액수가 10만원에서 20만원인 사건도 굉장히 많았다. 사정을 들여다보니 신청인들은 강력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상징적인 액수에 불과하더라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어떤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의 실질적인 배상을 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으로 조정이 끝나는 경우, 비록 현장에서는 만족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불만을 터트린다. 이런 것이 점점 쌓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손해배상액수를 좀 더 현실화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하나의 안을 만들었다. 몇 주 전부터는 이 안을 서울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보고 있는데 이 안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 예규로 만들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에 요청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아마도 내년쯤이면 위원회의 손해배상액수가 상당한 정도 현실에 접근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수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하는 일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실질적인 피해보상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징벌을 가하는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가 많이 있다. 손해배상으로 막대한 금액을 인정함으로써 지방의 작은 신문사는 잘못된 기사 하나로 폐간되는 식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사실보도를 위해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언론의 품위와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사에 유감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강화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도 오해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보도문의 크기와 관련한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느 지면인지 알 수 없는 곳에 아주 작은 크기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내보내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결과물인지 신문사 스스로 내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문장의 첫머리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져 그것이 정정보도를 하는 것인지 반론보도를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중재위원 몇 분을 모시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 결과는 아주 효과적으로 보이며 그간 문제가 있었던 정정이나 반론보도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이러한 개선안을 조만간 규칙으로 제정해 시행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언론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FTA 관련 반대취지의 글을 올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에 SNS의 책임문제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교수님과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하시면서 사회를 맡아주신 박성희 교수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영욱 교수님, 발제를 해주신 장재운 부장판사님, 김충일 위원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